

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4. 1. 12.>

보상금 지급 구분표(제10조 관련)

1. 재해부상군경

상이등급별	월 지급액(천원)	상이등급별	월 지급액(천원)
1급 1항	2,577	5급	1,344
1급 2항	2,430	6급 1항	1,226
1급 3항	2,327	6급 2항	1,129
2급	2,069	6급 3항	759
3급	1,934	7급	426
4급	1,622		

2.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

구분	월 지급액(천원)
가. 재해사망군경의 유족	
1) 배우자	1,358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1,575
3) 부모 또는 조부모	1,335
나.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	
1) 배우자	1,177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1,367
3) 부모 또는 조부모	1,158
다.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	
1) 배우자	432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623
3) 부모 또는 조부모	410

비고: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.